

[별표13] 미술창작대가 기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창작대가' 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미술관 등에서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사용하던 '창작대가'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계약당사자가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창작대가'는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하였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을 제시해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창작대가 지급 기준

제도명	미술창작대가
개념	미술 전시 참여와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등이 수반된 창작행위에 대한 일련의 보수로, 사회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작가비(Artist's Fee)'의 개념
적용 대상	전시참여 작가, 큐레이터, 평론가, 전시디자이너 등 전시에 참여하는 서면계약 당사자(개인 단위)
지급처	국공립미술관 전시, 정부 전시보조사업
지급 항목	참여비
	(개념)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초대'된 주체적 참여자가 받는 참여 자체에 대한 보수로, 미술창작에 대한 존중의 의미 (대상) 작가 등이 신작, 구작변형, 구작에 관계없이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액) ■(국공립미술관 전시) 최소 50만 원 ■(정부 전시보조사업) 상호협의 ※ 전시기간 및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창작사례비
	(개념)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 인건비성 경비 (대상) 작가, 기획자, 평론가 등 (산정기준) 시간기준단가×창작시간×전시유형(개인전, 단체전)×조정계수 ※ 산정기준 적용방법 (시간기준단가) 매년 갱신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나누어 연동 하되, 경력에 따라 1~1.8배 범위 내에서 조정 (창작시간) 해당 전시의 전시기획자가 자체 판단, 창작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전시를 위해 투입되는 노동행위(사전준비를 포함한 기획·구상·제작 일체)가 일어난 시간을 고려 (전시유형) 개인전(1,0), 2~5인전(0,9), 6~10인전(0,8), 11~40인전(0,7), 40인 초과(0,6)로 하되,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조정계수) 전시예산, 전시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0,7~1,0)

창작대가 기준 적용 관련

-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중 ■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 독립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을 사용 시 적용

[창작대가 기준 적용 예시]

분류	적용사례	지급여부	
		참여비	창작사례비
전시 출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구작을 변형하여 전시에 참여한 경우	○	○
	전시를 위해 기존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	
전시 출품 외	전시와 관련된 세미나, 아트토크, 강의,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경우		○
	전시기획을 하는 경우		○

- ◎ 재료비,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은 '제작지원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창작대가'와는 분리된 개념임. '표준계약서'에서는 별도 조항으로 전시계약과정에서 그 지급을 협의하게 됨

[창작자가 미술 전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받는 항목 구분]

항목	내용	구분
참가비	미술관 등이 기획하는 전시에 주체적 참여자(서면계약 당사자)로 '초대'된 그 자체에 대한 보수	창작대가
창작사례비	전시 참여에 있어서 기획·구상·창작 등 투입하는 일체의 노동행위에 대한 보수	
직접경비	재료비, 이전·설치비, 모형제작비, 자료조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 비용	제작지원비
간접경비	소모품비용 등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적 비용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유의

- ◎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 문화예술활동(노무)에 따른 총 대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하고 있음
- ◎ '창작대가'의 지급항목 중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 '창작사례비'는 노무에 따른 총 대가에 해당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